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| <h1>보도자료</h1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 |
| | <h2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2> | |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부서 |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| | |
| 책임자 | 김홍식 단장(2156-3300) | 담당자 | 황현일 사무관(2156-3311) |
| 배포일 | 2015.8.12.(수) | 배포부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5매 |

제 목 :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(대기업의 계열사 매각(Big-Deal)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)

1. 조치 개요

-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. 8. 12.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공개되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매각(소위 'Big-Deal') 정보를 이용한 매각대상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하기로 하였음

2. 주요 위반 내용

- 매각대상 회사 전·현직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
 - A사의 기획·총괄부서의 상무 甲과 부장 乙은 자사(A사)가 타 그룹 계열 대기업 C사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, C사 주식을 매수하였고
 - 이 과정에서 乙은 A사의 전직 대표이사 및 전무 등에게 전화하여 매각사실을 전달하였으며, 이에 전직 대표이사 등은 보유 중이던 A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음
[甲, 乙 및 전직 대표이사 등의 총 손실회피 금액 : 9억 3천5백만원]

3. 투자자 유의사항

- 동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(Digital Forensic) 기법*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으로,
 - *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,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,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·분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
 -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
-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,
 - 특히, 2015.7.1.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었던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'시장질서 교란행위'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,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

(붙임)

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

1.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등

가. 사건의 개요

- A'그룹 계열사인 A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사(A사)가 C'그룹 계열 C사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, 이를 이용하여 보유중인 자사 주식을 매도하는 한편, C사 주식을 매수한 사건임

나. 조사결과

□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

① (미공개정보 지득) 상장회사 A사의 경영지원팀 상무 甲과 부장 乙은 2014. 11. 0. 오전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「A사가 C'그룹의 C사에 매각될 것」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,

② (미공개정보 이용) 동 매각사실이 발표될 경우, A사 주가는 A'그룹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되어 크게 하락할 것이고, 반면 C사 주가는 A사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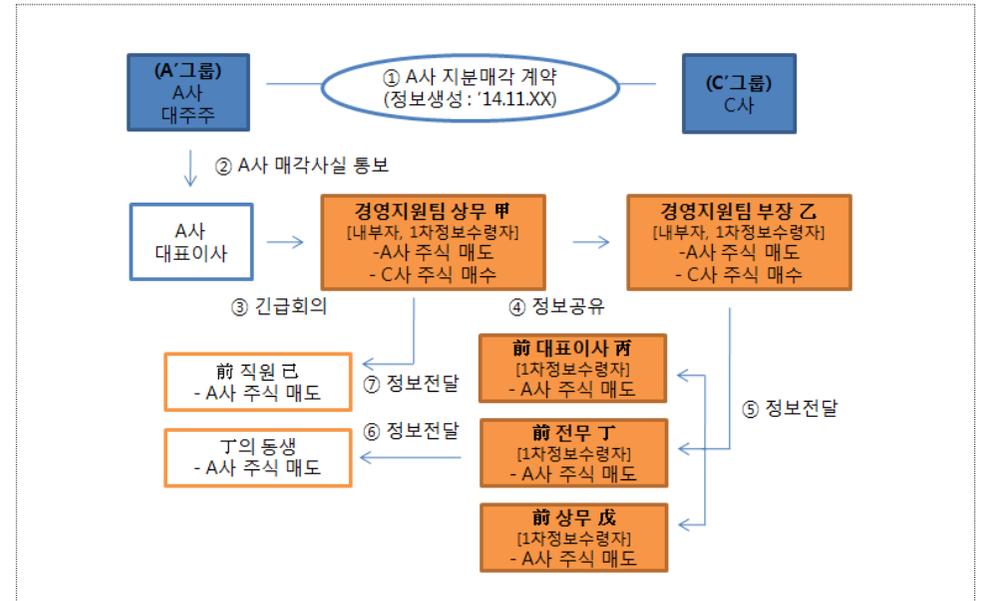
⇒ 매각사실이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보유중이던 자사(A사) 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고, 이와 별도로 C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음

③ (미공개정보 전달 및 이용) 乙은 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하던 중 A사의 前 대표이사 丙과 前 전무 丁, 前 상무 戊 등 3명에게 전화하여 동 매각사실을 이야기하며 보유주식 매도를 권유하였고, 甲도 차명계좌 명의인 己(A사 前 부장)에게 동 정보를 전달

⇒ 이에 丙·丁·戊는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고, 丁은 동생에게 별도로 동 정보를 전달하여 동생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게 하였으며, 己는 C사 주식을 매수

- ※ A사 주식 관련 혐의자 총 매도금액 : 23억 7천4백만원
(A사 주식 관련 혐의자 총 손실회피금액 : 9억 3천5백만원)
- ※ C사 주식 관련 혐의자 총 매수금액 : 5억 5천3백만원

<정보전달·공유 관계도>



□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

- A사 상무 甲은 A사 직원 등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7회의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

다. 조치내용

□ 고 발 : 甲 [A사 상무], 乙 [A사 부장],
丙 [A사 前 대표이사], 丁[A사 前 전무]

※ 戊와 己는 2차정보 수령자로 형사처벌이 불가하거나 부당이득금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'고발' 대상에서 제외

문의 : 자본시장조사단 황현일 사무관
(☎02-2156-3311)